

인권경영 헌장

피아이첨단소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 아동권리협약, 주주사인 Arkema의 그룹 인권정책 그리고 회사 진출 국가의 법규 등의 인권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아래 10가지 인권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회사가 직접 투자한 기업, 협력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회사의 인권보호 방침을 공유하고, 10대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개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1.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장애,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되는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2.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Harassment (Sexual, Non-sexual)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모두 포함한다.

6.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이수 연령 이하 또는 15세 미만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아동의 교육, 휴식, 건강, 영양, 위생,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7.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9. 인권실사

잠재적 인권 위험집단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인권이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권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10. 고객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